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27
----------	-----

2024. 10. 18.(금)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0월 11일

-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식 의원)

가. 제안사유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을 통해 건강한 출산 지원 및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할 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3.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출배경

- 본 제정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 인권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또한 명확하다고 할 것임.
- 하지만,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기되는 영아의 수는 매년 1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특히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sup>1)</sup>.
- 특히, 지난 해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냉장고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2015~2023년

---

1) 2011년~21년 발생 영아유기 범죄(영아유기죄, 교사·방조·학대, 유기치사상 포함) : 1,898건  
(경찰청 발표 자료 / 22.12.22)

기간 출생 미등록 아동은 2천 명이 넘고 이 가운데 262명이 사망한 사실도 드러남.<sup>2)</sup>

-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해 태어난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져 버린 '유령 아동'이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음.<sup>3)</sup>
- 이렇게 심각한 신생아 유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체계가 절실한 상황으로, 지난 해 국회에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지난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 또한,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

### <참고 1>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 보호출산제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3.6.30.)
-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10.6.)

- 2) - '태어났지만 사라졌다. 유령이 되어버린 아기들' (오마이뉴스, 2023. 10. 15.)
- 임신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자료: 보건복지부)

기간	소계	지자체			확인완료		소계	수사의뢰 (지자체 → 경찰)		
		생존 확인(771)			사망	의료 기관 오류		경찰 수사(1,095, 7.14. 기준)		
		출생신고 완료	출생신고 예정	해외출생 신고				수사 중	수사 종결	
								생존확인	사망*	
'15. ~'22.	1,028	704	46	21	222	35	1,095	814	254	27
'23. (1월~5월생)	120	92	19	2	6	1	24	15	8	1
'23 (6~12월생)	32	11	9	5	6	1	13	12	1	-

- 3) 충북 '유령 영아' 수사 의뢰 46건으로 늘어...11건 종결처리 (연합뉴스, 2023. 7. 7.)

- 이에, 본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산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출생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본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통해 안전한 출산을 돕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인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sup>4)</sup>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위기영아”는 위기임산부의 자녀로 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문제로 인해 원가정에서 양육 및 보호되지 못하는 2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집행 과정상 명확성과 법 체계성을 위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의 정의와 통일을 이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보여짐.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해당 조항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그 자녀인 위기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규정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4)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함. (안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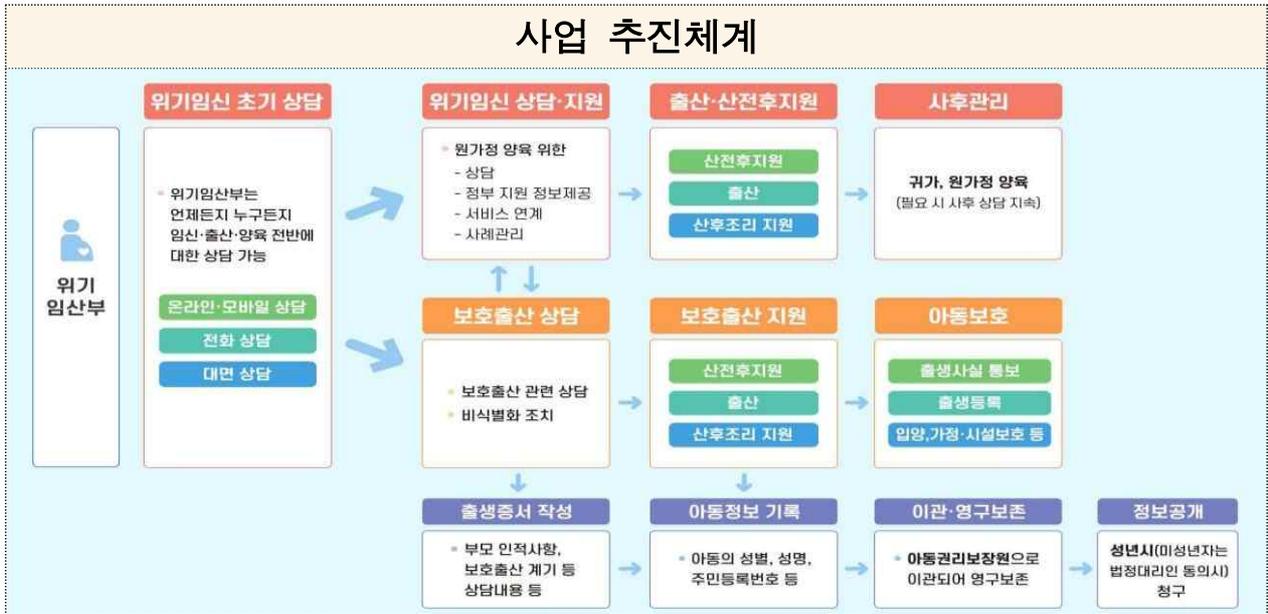
-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제공과 필요 서비스 연계를 비롯해 위기영아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및 보호조치를 연계,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전화 운영 그리고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명시함.
- 이러한 근거 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출산 및 양육을 준비하며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개별 사례에 맞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지역상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충북도에서는 지난 6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수행기관: 새생명지원센터)을 운영하고 있음.

## <참고 2> 위기임산부·위기영아 상담기관 현황

- 사업기간 : 2024. 6. ~ 12.
- 사업비 : **85,350천원**(국비 68,280<sup>80%</sup>, 도비 17,070<sup>20%</sup>)
- 수행기관 : **새생명지원센터**(청주시 청원구 소재)
- 사업내용
  - (위기임신 상담)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보호출산 지원) 보호출산 신청·접수, 비식별화 조치
  - (아동보호 지원) 아동의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제공, 보호조치 연계
  - (기록관리 지원) 부모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을 출생증서로 작성



○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해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상담 등 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임산부 및 영아의 권리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위기임산부 상담 및 지원 업무의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

-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 및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특히, 관련 법령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법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당 조례가 제정된다면 위기임산부와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영아유기의 예방 및 임산부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영아”란 위기임산부의 자녀로 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인 문제로 원가정에서 양육 및 보호되지 못하는 2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위기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돕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위기영아 지원에 관한 상담·정보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의료 서비스 연계
5.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지원 및 위기영아의 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상담 등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4.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모바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1.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회보장 급여 및 지원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여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지원 연계,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6에 따른 건강 관리 등 지원,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이용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의료 지원,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라. 「모자보건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4조, 제15조의17, 제15조의18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2.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3.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2.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

3.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숙려기간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6.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7.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출산 신청)**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위기임부의 신청으로 보며 보호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지, 제11조제5항에 따른 통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인도 또는 인도 요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 철회,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이 경우 임신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및 제17조제2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이하 본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비식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① 제9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제11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12조에 따른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아동의 출생기록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하여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기임부”는 “위기산부”로, “보호출산”은 “출산 후 아동 보호”로,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로, “제9조의 신청인”은 “제14조의 신청인”으로, “제9조제3항에 따라”는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으로, “제9조에 따른 신청”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가 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위기산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제1항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하여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7조 또는 제14조의 위기임산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그 보호자로부터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형법」 제9조의 연령이 되지 아니한 자
  3. 그 밖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를 판단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담기관의 장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도 소속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보호출산제로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아동유기를 방지해 아동과 산모의 건강·생명 보호
-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경제적·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안전한 출산 통로 마련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보호자의 안전한 보호출산 유도

## 2. 비용 발생 요인

- 지역상담기관 운영(위기임산부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상담·정보 제공·서비스연계 지원 등)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홍보비 일체(조례 제5조)
- 보호자신청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참석 수당 일체

## 3. 관련조문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운영)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지역상담기관 인건비 2명(전담인력) 및 관련 제수당 필요(당직 근무)
- 운영비, 사업비, 홍보비 등 일체 비용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5인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월 1회)

나. 추계 결과(2025년)

- 지역상담기관 인건비 등 운영비 : 126,700천원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 6,1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매칭 및 도비 확보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043-220-391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68,280	88,690	88,690	88,690	88,690	423,040
국 비 (지역상담기관 운영)		68,280	88,690	88,690	88,690	88,690	423,040
세 출		91,450	132,800	132,800	132,800	132,800	622,650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85,350	126,700	126,700	126,700	126,700	592,150
국 비(70%)		68,280	88,690	88,690	88,690	88,690	423,040
도 비(30%)		17,070	38,010	38,010	38,010	38,010	169,110
보호자신청심사 위원회 참석 수당		6,100	6,100	6,100	6,100	6,100	30,5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68,280	88,690	88,690	88,690	88,690	423,040
	보조금	68,280	88,690	88,690	88,690	88,690	423,040
자체 수입	소 계	23,170	44,110	44,110	44,110	44,110	199,610
	세외수입	23,170	44,110	44,110	44,110	44,110	199,610